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73

발의연월일: 2020. 9. 17.

발 의 자:송기헌·홍정민·이정문

양향자 • 이용빈 • 홍성국

서영석 · 송재호 · 김승원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군 사법(司法)제도 개혁을 위하여 평시에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여 군 사법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 및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심판관 운영과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평시에도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 법원 이관 및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현행 제5조 삭제, 안 제6조, 제10조 및 제24조, 안 별표 1 신설)
 - 1)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 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함.
 - 2)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 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 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 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 3)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신분은 군무원으로 함.
- 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안 제8조 및 제22조)
 - 1)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함.
 - 2)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군사법원에 부 (部)를 둠.
- 다.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

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안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 1)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함.
- 2)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함.
- 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안 제228조 및 제283조, 안 제228조의2 신설)
 -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 2)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 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함.
 - 3)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 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를 군검사 에게 통보하도록 함.
- 마.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현행 제238조제3항 삭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 바.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 안 제535조의2 신설)

- 1) 전시·사변 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사법원과 군검찰부를 설치하 고, 국방부에 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함.
- 2)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과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 중에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심판관을 둠.
- 3) 관할관은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관하여 판결을 확인하고, 그 형량을 감경할 수 있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 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 소부로"를 "법원으로"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계속"을 "계속(繫屬)"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편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를 둔 다.

-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에 관한 사항
- 2. 제4조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3.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에 부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관 1명
-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판사 3명
- 3.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1명
-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
 - ②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
 -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한다.
 - 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8조[부(部)] ① 군사법원에 부를 둔다.
 - ② 부에 부장(部長)군판사를 둔다.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군판 사를 겸할 수 있다.
 - ③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군사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은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 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
-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한다.
-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
-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 또는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
 -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로 한다.
 - ③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2항

- 을 준용한다.
- ④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 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제14조의 제목 "(관련사건의 이송)"을 "(관련사건의 심리분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련사건"을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개의 관련사건"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5조 중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直近)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은 군검사"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으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각 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 고등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대"를 "피고인의 소속 부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청구)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 법원이 없을 때
-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 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판관, 군검사 및 변호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직권 면직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군판사 1명

-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 4.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군법무관인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1. 군법무관·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 상으로 재직한 사람
 - ② 군법무관인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임시계급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군판사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 ④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 1. 「군무원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무원이나 군인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26조(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①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3년으

- 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군법무관인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군사법원장: 65세. 이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1조에 따른 정년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군법무관인 군판사: 56세.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법무관인 군판사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 제27조(군판사의 연임)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법무관인 군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 ③ 군사법원장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군법무관인 군판사에게는 「군인사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군판사에 대한 징계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무원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 제30조(군판사에 대한 직권 면직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군판사에 대한 직권 면직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무원인사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보칙)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을 적용한다.
 - 1. 군사법원장: 「군무원인사법」
 - 2. 군법무관인 군판사: 「군인사법」
-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제1항 중 "정병(廷兵)을"을 "법정경위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본문 중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을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 제33조의 제목 "(정병)"을 "(법정경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 ①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 명한다.

제33조제2항 중 "정병은 재판관"을 "법정경위는 재판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관할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관할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④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 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사건
 - 가. 각 군 본부, 각 군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 나.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 (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다.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제3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유지"를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제3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

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단서 중 "참모총장만을"을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로 한다.

제39조 중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을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 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를 "국방부검찰 단"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① 군검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호 중 "군사경찰과"를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을 "군무원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을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으로 한다.

제44조제2호 중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을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 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

제47조의 제목 "(군검찰부 직원·직무)"를 "(군검찰단 직원·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검찰부"를 "군검찰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검찰수사 관 및 검찰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8조제3호 중 "후견인"을 "후견감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관할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을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조사심리"를 "조사, 심리"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회피할 의사를 관할관에게 보고"를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62조제2항 단서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고지하여야 한다"를 "선고한다"로 한다.

제67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7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관할관"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으로 한다.

제68조의3제1항 중 "군사경찰"을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 사경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의4제2항 중 "정병"을 "법정경위"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판결서에는"을 "판결서에는 기소한 군검사와"로 한다.

제82조제6항 중 "군판사"를 "신문한 군판사"로 한다.

제93조의2제6항 중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으로 한다.

제99조 중 "검찰기관"을 "검찰부"로 한다.

제126조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45조 중 "원심군사법원에"를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한다.

제193조제4항 중 "정병"을 "법정경위"로 한다.

제228조제2항 중 "관할 검찰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으로 한다.

제2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 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2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2조의4제1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제1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2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2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55조제3항 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2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4조의 제목 "(군검사의 사건보고)"를 "(군검사의 사건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여야"를 "피의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301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한다.

제303조의 제목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를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 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을 "고등검찰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 군 검사의 의견을 묻고"를 "고등검찰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30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부대의 장"을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부대의 장"을 각각 "보통검찰부의 장"으로 하다.

제306조의2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306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374조제1항 중 "그 군(軍)의 다른 보통군사법원"을 "다른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78조 중 "군사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379조를 삭제한다.

제3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군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소속 부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고등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고등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01조제3항 중 "원심군사법원"을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04조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05조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10조 본문 및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을 각각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13조 중 "대법원"을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을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으로,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18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0조제1항 전단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

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7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8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9조(사실의 조사) 고등법원은 제427조와 제428조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변론 종결 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부당함 또는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할 때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제435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각각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36조 중 "원심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을 "관할권이 있는 다른"으로 한다.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40조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정(제379조는 제외한다)"을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으로, "재판관"은 "법관"으로, "군판사"는 "판사"로 본다.

제4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항소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원심판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사법원"을 "원심법원"으로 한다.

제453조 중 "원심군사법원"을 "원심법원"으로 한다.

제458조제2항 중 "항고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한다.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59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항고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46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항고군사법원"을 각각 "항고법원"으로 한다.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항고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462조 중 "항고군사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한다.

제464조 중 "항고군사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을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66조 중 "부대를 관할하는"을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으로 한다.

제469조제7호 단서 중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관할한다.

제477조 단서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한다.

제480조제1항 중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85조제1항 중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된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을 "청구된 경우에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488조제1항 중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으로 한다.

제492조 중 "대법원의"를 "상소법원의"로 한다.

제498조제1호 본문 중 "판결이"를 "원판결이"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제499조를 삭제한다.

제500조 중 "제498조제1호 단서 및 제499조"를 "제498조제1호 단서"로 한다.

제501조의2제1항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501조의14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501조의15제1항 중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501조의33을 삭제한다.

제503조제1항 본문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보통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로 한다.

제505조 단서 중 "소속 부대의 장"을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 총장"으로 한다.

제513조제1항 본문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에 대응하는 군검찰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5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를 "군사

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대의 장"을 "검찰단의 장"으로 한다.

제515조제1항 단서 중 "부대의 장"을 "검찰단의 장"으로 한다.

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
 - 1. 고등군사법원
 - 2. 보통군사법원
-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사법원 외에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있다.
-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①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 ④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 제534조의5(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1.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에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타군(他軍) 군사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 다.
 - ③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

하여 심판한다.

- 제534조의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전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제13 조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전시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 제534조의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 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내에 피고인과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 다. 확인조치 기간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관할관이 확인하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은 제40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서가

피고인 및 군검사에 대하여 송달된 날부터 각각 진행된다.

- 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先任)군판사가 된다.
-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각 군의 군판사는 각 군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국방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고, 군판사의 파견·겸임·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 모총장이 임명한다.

-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 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 ③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 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 ④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 제534조의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534조의1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 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

- 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 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
 - 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 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 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⑥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①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의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 다.
 - ③ 통역인과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 제534조의16(전시 군검찰부)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에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군검찰부(이하 "전시 군검찰부"라 한다)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한다.

- ②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 ③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 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④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 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被疑者)인 사건
- 2.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

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3.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 ③ 전시 군검찰부가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군검사의 정원과 수) 국방부장관은 전시·사 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의3 및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군판사·군검사의 정 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에 배치할 군판사·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35조를 삭제한다.

제5편에 제5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5조의2(간주규정) 이 편에서는 이 법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

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관할검찰단"·"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는 "관할 군검찰부"·"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로, "군사법원장"·"고등검찰부의 장" 및 "보통검찰부의 장"은 각 "관할관"·"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제501조의 15제1항·제505조·제513조제1항·제514조·제515조 중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검찰단의 장"은 각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가주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군법무관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법무관으로 7년 이상 복무 중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고등법원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에 이관한다. 이경우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또는 각군 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보통검찰부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또는 각 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검찰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9조 단서 중"「군사법원법」 제11조(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을"「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으로 한다.

③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0항 후단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④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을 "참모총장"으로 한다.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및 제13조제3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u>군사법원의 소재지(제6</u>조제1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제1지역군사법원	충청남도
제2지역군사법원	경기도
제3지역군사법원	강원도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광역시

[별표 2]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제6조제2항 관련)

군사법원	관할구역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및 해외 파병지역
제1지역군사법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2지역군사법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강원도 철원군을 포함한다)
제3지역군사법원	강원도(철원군은 제외한다)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② (생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	③
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	
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	
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	
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	<u>법원으로</u>
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	
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
정의 신청) ① 법원과 군사법원	정의 신청) ①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	
(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	계속(繫屬)
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	
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 을 정한다.

② 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 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 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2명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 관 각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③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 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신 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군사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 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원운영위 원회를 둔다.

- 1. 군판사의 임명 및 연임 동의 에 관한 사항
- 2. 제4조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3. <u>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u>

사항

- 4. 다른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 군사법원 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회의 에 부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운영 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 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 부장관이 되고, 군사법원운영위 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이 된다.
- 1.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관 1 명
-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판사 3명
- 3.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군법무관 각 1명
-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

- 제5조(군사법원의 종류) 군사법원 은 다음의 두 종류로 한다.
 - 1. 고등군사법원
 - 2. 보통군사법원
- 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은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 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제2항에 따른 보통군사 법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 등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편성된 편 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 2.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 하는 부대 또는 기관(수사기 관은 제외하며, 이하 "부대"라 하다)
 -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 |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 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 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 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 과 같다.
 -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한다.

- 법원에 관할관을 둔다.
 -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 방부장관으로 한다.
 -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 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 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 할관이 겸임한다.

- 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 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방 부직할통합부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 휘·감독한다.
 - ②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 다.
 - ③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 제7조(군사법원 관할관) ① 군사 | 제7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
 - ②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 다.
 -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 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한다.
 - 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8조(관할관의 권한) ① 고등군 | 제8조[부(部)] ① 군사법원에 부를 둔다.
 - ② 부에 부장(部長)군판사를 둔 다.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 군판사를 겸할 수 있다.
 - ③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 에서 재판장이 되며, 군사법원 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 를 감독한다.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 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 다.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 은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 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 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 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 은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 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 다. 이하 같다)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 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 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 하여 심판한다.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 법원에 둔다.

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 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 건

아니하다.

- 2.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 관할지역 또는 경 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 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 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부대 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 관할지역 또는 경 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 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 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 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에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타군(他軍) 군 사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②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사법원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 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u>판할 수 있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 여야 한다.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수행)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 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 判事)에게 준용한다.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①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
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
된 부대 또는 기관[국방부, 국방
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 또는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
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의 소
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1
항에서 규정한 관할 외에 선적
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
할로 한다.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①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인사건 및 타군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서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 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 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단 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 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의견 을 물어 1개의 군사법원을 지정

- ③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 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사건의 이송) 관련사
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
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
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 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u>각 군사법원에 공</u> 통되는 직근(直近) 상급부대의 <u>군사법원은 군검사</u>의 신청에 따 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

제14조(관련사건의 심리분리) 관
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
_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군사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
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
<u>다.</u>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
<u> </u>
,
제17조(관할의 경합)

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u>각</u> 군 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 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 고등군사 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 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관할결정사유 변경의 효과) 관할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소속 변경이나 그밖에 관할을 정하는 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장성급 장교의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u>부대</u>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

<u>중앙</u>
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
고인의 신청에 따라
<u><삭 제></u>

중앙지역군사법
<u> 인</u>
1. (현행과 같음)
2
피고인의 소속 부대

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 ③ -----을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_	_	_	 	-	_	_	_	_	_	-
 	 	 _				 _	_	_					

- ② (현행과 같음)
-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청구) 군검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 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 다.

- 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 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 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재판관의 독립) ① (생 략)
 - ② 재판관, 군검사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 | 제22조(군사법원의 구성) ① 군사 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 명으로 구성한다.
 -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 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先任)군 판사가 된다.

<신 설>

제21조(재판관의	독립)	1	(현행
과 같음)			

② 재판관	

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 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 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 으로 한다.

-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①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 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 1. 군판사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23조에 따른 군판사의 임 명에 관한 사항

- 3. 제27조에 따른 군판사의 연 임에 관한 사항
- 4. 제28조에 따른 군판사의 해 임에 관한 사항
- 5. 제29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 6. 제30조에 따른 군판사에 대한 직권 면직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사항
- 7. 군판사에 대한 진급 추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군판사 인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 1. 군판사 1명
-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 명

-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군판사의 임명에 관한 심의에 만 참여한다.
- 4.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 하는 변호사 1명
-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 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 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 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6.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장교 3명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 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 ①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 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 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영관급 이상의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 부 및 각 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③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고, 군판사의 파견·겸임·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④</u> 군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군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 ①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 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한다.
- ② 군법무관인 군판사는 군판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 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 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아니한다.

-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 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 이 충분한 사람
 -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 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 제24조(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 사법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 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1. 군법무관・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 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 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 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군법무관인 군판사는 군법무 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 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 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 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군판사 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 ④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 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 제25조(재판관의 지정) ①재판관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 📗 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 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 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 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 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 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 으로 한다.
 - ③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 다.

연수를 합산한다.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 다.
 - 1. 「군무원인사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라 군무원이나 군인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 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제26조(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 | 제26조(군판사의 임기·연임·정 년 등) ① 군사법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 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군법무관인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 1. 군사법원장: 65세. 이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1조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 2. 군법무관인 군판사: 56세.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 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 제27조(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7조(군판사의 연임) ① 국방부 ①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 판관으로 한다.
 - ②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 다.

- 아니하되, 군법무관인 군판사 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 임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 <u>용</u>한다.
- ④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 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 직되지 아니한다.
- 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 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는 군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 을 하지 아니한다.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 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 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27조의2(관할관이 지정한 사건 의 정의)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관할관 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 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 한다.

- 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 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는 제외한다)
- 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 된 죄
- 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 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 | 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

③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삭 제>

제28조(재판관의 계급) ① 재판관 |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 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에서 해임할 수 있 다.

다.

- 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 항 및 제2항에 준한다.
- 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 다.

- 제29조(피고인 신분이동과 재판관 |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군판 의 계급)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 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 을 받지 아니한다.
- 제30조(항소 등과 재판장의 계급) 제30조(군판사에 대한 직권 면직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 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 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 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신 설>

- ② 국방부장관은 군법무관인 군 판사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군판사의 직 에서 해임할 수 있다.
- ③ 군사법원장에 대해서는 「군 무원인사법」 제29조를 적용하 지 아니하고, 군법무관인 군판 사에게는 「군인사법」 제1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에 대한 징계는 군판사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무 원인사법 : 또는 「군인사법 : 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 니한 전역) 군판사에 대한 직권 면직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 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무 원인사법 또는 「군인사법」 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30조의2(보칙) 군판사의 인사관 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 <신 설>

제31조(직원) ① 군사법원에 서기 | 제31조(직원) ① ------와 정병(廷兵)을 둔다.

② (생략)

<신 설>

- 제32조(서기) ① 서기는 <u>각 군 참</u> 제32조(서기) ① ---- <u>국</u>방부장관 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 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 다.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할 통합부대의 서기는 국방부장관 이 임명한다.
 - ② (생략)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법을 적용한다.

- 1. 군사법원장: 「군무원인사 법 |
- 2. 군법무관인 군판사: 「군인사 법」
-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① 군 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 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정경위를 ----.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 방부 소속으로 한다.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정병) ① 정병은 「군인사 제33조(법정경위) ①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

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 경찰과"라 한다)에 소속된 부사 관과 병(兵)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 ② <u>정병은 재판관</u>의 명령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및 그 밖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 제34조(통역인)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u>관할관</u>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 다.
 - ② (생략)
- 제35조(기사) ① 기사는 장교 또 는 군무원 중에서 <u>관할관</u>이 임 명한다.
 - ② (생략)
- 제36조(군검찰부) ① 군검찰부는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검찰사무를 관장한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
 - ②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 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 며,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

	② 법정경위는 :	재판장	
제	34조(통역인) ①		
			<u>국방부장</u>
	<u>관</u>		
	② (현행과 같음)	
제	35조(기사) ① -		
		국방	<u> 부장관</u>

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 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 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 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

- 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 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 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 관은 필요할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 ③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 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 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임명한다. ④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에 설 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

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

- ⑤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 (管下) 각 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 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 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고등검찰 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

- 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있다.
-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 관이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 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④ 고등검찰부의 관할은 보통검 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 건·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 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 한다. 다만, 각 군 검찰단 고등검찰부는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 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 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 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받는 사람이 피의자(被疑者)인 사건
- 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사건
- 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①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본부의 고등검찰부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부대의 실 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 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부 대 보통검찰부 군검사의 신청에

- 2. 각 군 검찰단: 다음 각 목의 사건
 - <u>가. 각 군 본부, 각 군 직할부</u> <u>대 소속의 군인, 군무원이</u> 피의자인 사건
 - 나.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 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 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 의자인 사건
 - 다. 각 군 부대의 작전지역 ·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
 에서 죄를 범한 「군형
 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
 람이 피의자인 사건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 자의 지위, 피고인의 소속 부대 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 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 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 의하여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 다.
- ⑧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검찰부는 제6항 및 제7항에 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 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 건을 관할할 수 있다.
- ⑨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운 📗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대의 장에게 소속되며 그 직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 1. ------유지에 필요한 행위

<신 설>

- 2. 군사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 | 감독
- 3. (생략)

<신 설>

- 다.
-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 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 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 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 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군검사의 직무) <u>군검사는</u>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u>군검사</u>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 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
-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 구
- 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
- 3. (현행과 같음)
-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총괄하며,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단서 신설>

제40조(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 지휘·감 독)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
	<u>단장만을</u>
제	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
	무 지휘·감독)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
	<u>사를</u>
	<u>다만, 구체적 사건에</u>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
ภ	<u>회·감독한다.</u>
제	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
	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u>· 감독에 따른다.</u>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u>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u>
	<u>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u>

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군검사 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 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 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생략)

<신 설>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 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수사한다.

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
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u>수 있다.</u>
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u>국</u>
<u> 방부검찰단</u>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① 군
검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② 각 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
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제43조(군사법경찰관)

1. <u>군사경찰과</u>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 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 에 소속된 <u>군무원으로서 범죄</u>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 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 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 4. (생략)

-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제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 1. (생략)
 -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
	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
	<u>다) 군무원 중 국방</u>
	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
	<u>는</u>
2.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
	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3.	.・4. (현행과 같음)
4	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	
-	
-	
1.	. (현행과 같음)
2.	

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 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생략)

-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 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 간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
 (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인
 <u>병</u>
 -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되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
<u>밀 보호법」</u>		
	- – – – -	
0 /뒫케키 키.ዕ\		
3. (현행과 같음)		
46조(군사법경찰	리) -	
1. 군사경찰과의	부사관	<u></u>
에 따라 범죄수	사업두	^그 를 관장
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_
모총장이 군사		
<u> </u>	пое	ј— д
9 구시아버지의	ᄇᆔᄾᆒ	人不曰

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

3. (생략)

- 제47조(군검찰부 직원·직무) ① 제47조(군검찰단 직원·직무) ① 군검찰부에 검찰수사관과 검찰 서기를 둔다.
 - 임명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③ • ④ (생 략)

- 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 제48조(제척의 원인)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2. (생략)
 -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 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인 인 경우
 - 4. 5. (생략)
 - 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 6. ----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 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 는 사람

3. (현행과 같음)

군검찰단-----

-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 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 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④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 후견감 독인--
- 4. 5. (현행과 같음)
- 여 관할관, 군검사 또는 군사 --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 관 또는 사<u>법경찰관</u>-----

Ť	
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	7
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	
초가 되는 <u>조사심리</u> 에 관여한	<u>조사, 심리</u>
경우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3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	
지 못할 때에는 <u>직근 상급부대</u>	<u>중앙지역군사</u>
의 군사법원이 결정하여야 한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
다.	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중앙지
	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
	<u>원</u>
	.
제56조(재판관의 경질) 제척되거	<u><삭 제></u>
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	
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관할관은	
재판관을 바꾸어야 한다.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 재판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
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할 의사를	<u>ই্য</u>
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②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
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	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u>관을 바꾸어야 한다.</u> <신 설>

제62조(국선변호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 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 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 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 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 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 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 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 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7조(재판의 공개) ① (생 략)

-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생략)

<신 설>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
조를 준용한다.
제62조(국선변호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사법원
<u>.</u>
제67조(재판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u>선고한다</u> .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① (현행
과 같음)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
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신 설>

- ② <u>관할관</u>은 필요에 따라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 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 ② (생략)

수 있다.

제68조의4(감치 등) ① (생 략)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u>정병</u> 또 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즉시 행 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
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u>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u>이 정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①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
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4(감치 등) ① (현행과 같
승)
②
<u>법정경위</u>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생 략)
 - ② <u>판결서에는</u>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 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 ⑤ (생 략)
 -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u>군</u><u>판사</u>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적게 할 수 있다.
 - ⑦ (생략)
-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복사) ① ~ ⑤ (생 략)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 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군검사 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기 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 다.
- ⑦ (생 략)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군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판결서에는 기소한 군검사와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신</u>
문한 군판사
⑦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
· 복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6
중앙지
ㅡㅡㅡ 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
법원 법원

⑦ (현행과 같음)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군검사는 <u>군사법원</u>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 (移監)할 수 있다.
-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군사법원이 하여야 한다.
-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생략)
 -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법 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u>정병</u> 또 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 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 행한다.
- ⑤ ~ ⑧ (생 략)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검찰부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 고등법
원을 말한다)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
정)
원심군사법
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4
<u>법정경위</u>
<u>.</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생 략)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u>관할 검</u>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검사는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②
<u>정당한</u>
사유가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u>관할 검찰단</u>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
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
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군사법원

수사) ① (현행과 같음)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 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 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 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2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u>보통군</u> 사법원 군판사는 타당하다고 인 정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u>보통군</u>
 사법원 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④·⑤ (생 략)

제232조의3(긴급체포) ① 군검사 저 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 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군사법원	
②	<u>군사법</u>
<u>원</u>	
③	<u>군사법</u>
원	
.	
④·⑤ (현행과 같음)	
세232조의3(긴급체포) ①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보통군사법원 권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 · 2. (생략)
- ② ~ ④ (생 략)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지기간)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 관은 제232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제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 하려면 지체 없이 군검사는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

군사법원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기간) 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기간) 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기간) 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기간) 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 기간) ①

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238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 군검사는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청구 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 은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 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 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 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 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생략)
- ③ 군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군사법원
4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⑤ 군검사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군검사에게 준다.

⑥ (생략)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 자심문) ① 제232조의2·제232 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 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을 청구받은 <u>보통군사법원</u> 군판 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u>보통군사</u> 법원 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u></u>	<u> </u>
_	
(5)
	군사법원
_	
	,
_	
_	
_	
_	
6) (현행과 같음)
제23	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
ズ	심문) ①
_	
_	
_	<u>군사법원</u>
_	
_	
_	
2)
	군사법원
_	
_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 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 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군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 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피 의자가 체포되어 있으면 심문기 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 다.

④ (생 략)

⑤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할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u>보통군사법원</u> 군판 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

③ 군사법원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사법원
⑥·⑦ (현행과 같음)
8
<u>군사법원</u>

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 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⑩ (생 략)

<신 설>

-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보 저 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 장을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신청 에 관하여는 제238조제3항을 준 <u>용한</u>다.
-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저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 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
⑨·⑩ (현행과 같음)
세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
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
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
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세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u>군</u>
사법원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세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u>보</u> 통군사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⑭ (생 략)

- 제254조(압수·수색·검증) ① 군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 는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u>보통</u>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 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 을 할 수 있다.
 -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신청 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u>보</u> 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 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수 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 분) ①·② (생 략)
 -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상황이 긴급하여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영 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u>산</u> 사법원
·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254조(압수·수색·검증) ①
<u>군사</u> 법원
<u>군</u> 사법원
군사법원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치) (생략)

<신 설>

제284조(군검사의 사건보고) 군검 사는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 에 따라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해당 군검 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이 설 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 군 검사는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되 어 있는 부대의 군검찰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 제301조(재정신청) ① -----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 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군 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 ② -----

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 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 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

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284조(군검사의 사건통보) ---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 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 <후단 삭제>

법원-----

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 사가 소속된 <u>부대의 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303조(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의 처리) ①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 검사 소속 <u>부대의 장</u>은 군검사 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 정할 때: 즉시 공소제기를 명 령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 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 정할 때: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u>국방부</u> <u>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u>에 게 송치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u>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u> 참모총장은 고등검찰부 군검사 의 의견을 묻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

보통검찰부의 장-
③ (현행과 같음)
]303조 <u>(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u>
<u>장의 처리)</u> ①
<u>보통검찰부의 장</u>
1
1.
고등법원
2
고등검
<u> 찰부의 장</u>
②
고등검찰부의 장은
1

정할 때: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군사법원과 재정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 정할 때: 30일 이내에 그 기록 을 고등군사법원에 송치한다.
-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u>고등군</u> <u>사법원</u>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③ ④ (생 략)
 - ⑤ 고등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 관할 군검사 소속 <u>부대의 장</u>에게

<u>보통검찰부의 장</u>
고등법원
2
그도비이
<u>고등법원</u>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u>고등법</u>
<u>원</u>
.
② 고등법원
1.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고등법원</u>
보통검찰부의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군 검사 소속 <u>부대의 장</u>에게 사건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군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제한) 재정신청사건 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은 제 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① 고등 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 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따라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u>장</u>	
<u>보통검</u>	
6	·
<u>보통검찰부의 장</u>	
 제306조의2(재정신청사 열람·복사 제한)	
고등법원·	
·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u>법원</u>	

- 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고등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④ (생 략)
-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① 군 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 면 <u>그 군(軍)의 다른 보통군사</u>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② (생략)
-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 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군사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선고유예, 형의집행유예,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② 고등법원
<u>.</u>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①
<u>다른 군사법원</u>
<u>.</u>
② (현행과 같음)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법원
<u><삭 제></u>

하며,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 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피고인이 작전, 교육 및 훈 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 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 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 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 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 내에 피고인과 군검사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확인조치 기간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 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 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소재지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그 군사법원에 청구하

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군검사가 피고인의 현 재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청구하여 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형 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

여야 한다. 다만. 고등군사법원 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법원에 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 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 | 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① (생 략)
 - ②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 | 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 다. 다만, 관할관의 확인조치 대 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제 379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 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 다.
- · ② (생 략)
 - ③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 | ③ ------리하는 사람은 상소장을 원심군 사법원에 보내고, 상소장을 접 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결정)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

청구하여야 한다.

- ② ----- 군사법 원 또는 고등법원-----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① (현행 과 같음)
 - --. <단서 삭제>

-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워심군 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 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 다)----.
-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① -----

은 <u>군사법원</u>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 정지) ① <u>군사법원</u>은 상소권회 복 청구를 받으면 제404조제1항 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 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을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 원에 할 수 있다.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 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u>대</u>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u>보</u> 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u>군사업원 또는 고등업원</u>
<u>.</u>
② (현행과 같음)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
정지) ①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
원
② (현행과 같음)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u>상소법원</u>
<u>.</u>
<u>상소법원</u>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
의 통지)
<u>상</u>
<u>소법원</u>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군
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u>고</u> 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 ~ 12. (생 략)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① 고등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 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 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지 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20조(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이 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 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사법원에

-		
_		卫
-	<u>등법원</u>	•
-	1. ~ 12. (현행과 같음)	
		٦.
세4	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공
	무)	
_		
-		
-	고등법원	
-		
제4	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
	지) ① 고등법원	
	<u> </u>	
-		
-		
-		
(2	
-		
-		
-		
_	고등법원	
	<u>平 0 日 C</u>	
-		
-		
، الح	420조(항소이유서) ①	
∕ 1] [∠]	420조(영소의뉴시) ①	
-		
-		
-	고등법원	

제출하여야	한다.	0]	경우	제
401조를 준용	き한다.			

② (생략)

- 제421조(답변서) 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할 수있다.
 - ③ 답변서를 받은 <u>고등군사법원</u>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 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② (생 략)
- 제427조(조사범위) 고등군사법원 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u>고등군사</u> 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

② (현행과 같음)
제421조(답변서) ①
고등법원
<u>.</u>
②
<u>고등법원</u>
③ <u>고등법원</u>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
<u>고등법원</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7조(조사범위) <u>고등법원</u>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u>고등법원</u>

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 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제429조(사실의 조사) ① 고등군 | 제429조(사실의 조사) 고등법원은 사법원은 제427조와 제428조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 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 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을 조 사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변 론 종결 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 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함 또는 사실의 오인이 판 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할 때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군판사가 하 게 하거나 다른 군사법원의 군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군판사 는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435조(파기자판) 고등군사법원 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 또 | 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조사한 증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427조와 제428조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 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수 있 다. 다만, 제1심의 변론 종결 전 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 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 하여는 형의 양정의 부당함 또 는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 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 할 때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 제435조(파기자판) 고등법원------ 고등법원-----

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 접 판결할 수 있다.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 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 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 려보내거나 원심군사법원이 설 치된 부대의 상급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고등군사법원의 심판에서 판시
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제441조(준용규정) 이 절에 특별 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 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3절

·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u>관할권이 있는 다른</u>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 E AJ VJ
<u>고등법원</u>
② (현행과 같음)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
<u>고등법원</u>

공판에 관한 <u>규정(제379조는 제</u> <u>외한다)</u>을 준용한다. <u><후단 신</u> <u>설></u>

<u><신 설></u>

-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 저 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1. ~ 5. (생 략)
 - 6.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

 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 7. (생략)
- 제443조(비약적 상고) ① 다음 각 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 1. 보통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u>규정</u>
	<u>이 경우</u>
	"군사법원"은 "법원"으로, "재판
	관"은 "법관"으로, "군판사"는
	<u>"판사"로 본다.</u>
	②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항소심에 관
	한 규정에 따른다.
1	
	 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7. (년 8년 월 년 B) 443조(비약적 상고) ①
'''	
	군사법원
	<u>让小门首也</u>
	1 7 1 H ol
	1. 군사법원

아니하였거나 법	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 2. <u>보통군사법원</u>의 판결 후 형 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 3. <u>보통군사법원</u>에 대한 재판권 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② (생략)

- 제449조(파기이송·환송)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법원에이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u>군사법원</u>에 돌려보내야 한다.
-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 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 과 증거물을 <u>원심군사법원</u>에 돌 려보내야 한다.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

2. 군사법원
3. 군사법원
② (현행과 같음)
제449조(파기이송·환송) ①
원심판결
<u> 연 급 건 연</u>
 -
②
원심법원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u>원심법원</u>
<u>.</u>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

정) ① (생 략)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u>항고군사법원</u>에 보내야 한다.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

-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u>항고</u> 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 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u>항</u> 고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② <u>항고군사법원</u>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 다.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② (생 략)

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항고법원</u>
<u>.</u>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
법원
<u>.</u>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u>ठ</u> ू-
고법원
② 항고법원
.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u>항</u>	③ <u>항</u>
고군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	고법원
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57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군사법	
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u>항고군사법원</u> 은	<u>항고법원</u>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	
다.	
제464조(재항고) <u>항고군사법원이</u>	제464조(재항고) <u>항고법원이나 고</u>
나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	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u>여는</u>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	
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	
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	
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66조(준항고) 군검사나 군사법	제466조(준항고)
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	
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	
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	
는 군검사 소속 부대를 관할하	<u>보통검찰부에</u>
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u>대응하는</u>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 6. (생략)
 -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 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 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군검사, 검 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 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다만. 원판결 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군 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 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 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 저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국방부 법원이 관할한다.

세469조(재심이유)
1. ~ 6. (현행과 같음)
7
1.
그치버이하다 사소버이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
세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

직할통합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각 군 관하 보 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 원이 각각 관할한다.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 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u>군</u> 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 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80조(사실조사) ① 재심청구를 받은 <u>대법원 또는 군사법원</u>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의부원 또는 수명군판사에게 재심청구 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 령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 또 는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u>군</u> 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
제480조(사실조사) ① <u>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u>
② (현행과 같음)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 의 결정) ①

된 경우에 제1심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또는 제2심의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88조(재심의 심판) ① 재심개 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 여는 제485조의 경우 외에는 <u>대</u>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u>고등법원</u>
②
청구된 경우에 제1심의 군사법
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
 제488조(재심의 심판) ①
<u></u>
사법원이나 상소법원
 (최 전 (청 레 기 기 이)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u>상소법원의</u>
 레 400 ㅈ (회 기 이 - 회 건)
제498조(파기의 판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	다.	

- 1. <u>판결이</u>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u>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에는 원</u>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2. (생략)
- 제499조(고등군사법원의 판결) 환 송 또는 이송을 받은 고등군사 법원은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한다.
- 제500조(판결의 효력) <u>제498조제1</u> 제 호 단서 및 제499조에 따른 판 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보통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1. <u>원판결이</u>
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500조(판결의 효력) <u>제498조제1</u> <u>호 단서</u>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 는 사건) ① <u>군사법원</u>

처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보 통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 사"라 한다)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 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 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 결심판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에 처할 수 있다.
-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u>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u> 받아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② (생략)

- 제501조의33(확인조치 규정의 적용 배제) 이 장의 즉결심판에는 제379조의 확인조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03조(집행 지휘) ① 재판의 집 행은 그 재판을 한 <u>군사법원이</u> <u>설치된 부대</u>의 군검사가 지휘한 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군사법

② (현행과 같음)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u>군</u>
사법원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 -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
<u>할</u> 군사법원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503조(집행 지휘) 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

원이나 재판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보통군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가 지휘한다.
- ③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서 그 신분 취득 전에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촉탁에 따라군검사가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판결서 등본을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둘 이상 저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및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군검사는 소속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무거운 형의 집

②
군사법원에 있
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에 대응
하는 보통검찰부
③
군사법원에 대응
하는 보통검찰부
네505조(형 집행의 순서)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

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 저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 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 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 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여 러 개 있는 경우에는 고등군사 법원 관할관이 지정하는 군검찰 부의 군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 한다.

②·③ (생 략)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지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u>군사법원이</u> 설치된 부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
군사법원(고
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
에서 같다)에 대응하는 군검찰
<u> </u>
<u>국방부장</u>
관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지 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1. ~ 7. (생략)
-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u>부대의 장</u>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 저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 군검사는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의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할 때에는 해당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③ (생 략)

<신 설>

	. ~ 7. (현행과 같음)
-	2
	<u>검찰단의 장</u>
제:	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
	·
	검찰단의
	장
	②・③ (현행과 같음)

-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사법원이라 "전시 군사법원"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
 - 1. 고등군사법원
 - 2. 보통군사법원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

- <u>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u> <u>에 설치한다.</u>
- ②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사법원 외에 편제상 장 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 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①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 ③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 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 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 ④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 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 제534조의5(전시 군사법원의 심 판사항)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 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1.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

 (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에 있거 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타군(他軍) 군사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②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 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 을 심판할 수 있다.
- ③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 다.

제534조의6(전시 관련사건 관할 의 병합과 예외) ① 장성급 장 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전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 항 및 제13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

군사법원 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전시 군사법원 기정하여 병합관할하게할 수 있다.

제534조의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제외한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을확인하여야하며, 「형법」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 여야 하며 확인조치 후 5일 이 내에 피고인과 군검사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 기간 을 넘기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 인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 인조치와 그 송달에 걸린 기간 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관할관이 확인하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은 제40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확인조치서가 피고인 및 군검사에 대하여 송달된 날부터 각각 진행된다.
- 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 ③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 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先 任)군판사가 된다.
-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각 군의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 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 하고, 국방부의 군판사는 국방 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

<신 설>

항에서 규정하는 군판사인사위 원회의 심의 또는 군사법원운 영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가 군 본부로 하고, 군판사의 파견·겸임·순회재판 등의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①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

- 1.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

 람
- 2.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 ② 관할관의 부하가 아닌 장교 를 심판관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 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신 설>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 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 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 판관) 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 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 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 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 으로 한다.
 - ③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 판관으로 한다.
 - ④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제534조의13(관할관이 지정한 사 건의 정의) 제534조의1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관할

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 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 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 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 한 사건을 말한다.

- 1.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2

 편제15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
- 2.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

 정된 죄
-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 다.
 - 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 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 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계 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

- 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 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⑥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①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각 군 참 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의 전시 군 사법원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兵)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 ③ 통역인과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 한다.
- 제534조의16(전시 군검찰부)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군검찰부(이하 "전시 군검찰부"라 한다)는 고등검찰 부와 보통검찰부로 한다.

- ②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고, 보통검찰 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 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 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 를 보류할 수 있다.
- ③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각 호와 같다.
- 건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
 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
 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2.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 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

- <u>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u> <u>자인 사건</u>
- 3.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
 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
 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
 람이 피의자인 사건
- ④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被疑者)인 사건
- 2.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 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 3.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신 설>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 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 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감 독) ①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 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 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 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 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 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③ 전시 군검찰부가 군검찰부 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군검사 의 정원과 수)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

의3 및 제41조의2에도 불구하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① 제 534조의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해당 소송 기록을 심사하여 하되, 그 양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 할 수 있다.

<u><신 설></u>

고 군판사·군검사의 정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 부에 배치할 군판사·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535조의2(간주규정) 이 편에서 는 이 법 중 "고등법원"은 "고 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 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 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 군사법원"으로, "한고법원"은 "항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 찰부"는 "관할 군검찰부"·"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로, "군사법원장"·"고등검찰부의

장" 및 "보통검찰부의 장"은 각 "관할관"·"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관할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제501조의15제1항·제514조·제515조 중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검찰단의 장"은 각 "관할 군검찰부가 설 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간주한다.